복지이슈 FOCUS
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
제12호
2020-12
2020. 12.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석희정 연구위원(seokhj@ggwf.or.kr)

목차

Ⅰ.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진배경
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진현황 및 문제점
Ⅲ. 향후 개선과제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연구진

연구책임 | 석희정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 복지이슈 FOCUS는 빠른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현안 및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복지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19 Fax : 031-898-5935 E-mail : seokhi@ggwf.or.kr

■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진배경

○ 경기도는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주택 및 돌봄 등 자립생활지원 도입

- 2016년 6월 경기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탈시설 로드맵 5개년 계획수립을 건의, 이후 경기복지재단에서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실시
- 201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계획(2018~2022)」 수립하여 자립생활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제시
- 이후 2019년 거주시설 학대피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의 조례에 추가시킴으로써 경기도의 자립생활 전환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시켜 시범사업 등을 추진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

○ 탈시설 및 자립전환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도 사업추진의 한계 노출

- 경기도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을 매년 예산 상황 및 제반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확대계획을 세우지만 정작 추진의지 및 속도는 매우 느린 편
- 또한 경기도의 자립생활지원서비스는 타 시도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경기도 장애인구 대비 부족한 상황이고 주거지원 서비스는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 두 가지 형태로만 운영되어 서울시에 비해 주택모델이 단조로운 편
-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자립생활지원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의 향후 개선과제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예산 확대 및 정책 효과성 검토 필요
- 실효성 있는 경기도 중증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 정책 수립 시급
-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 마련 필요

Ⅰ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진배경

○ 경기도는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주택 및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립생활지원사업 도입

- 2016년 6월 경기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경기도 탈시설 로드맵 5개년 계획수립을 건의하였고, 이후 경기복지재단에서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 및 정책과제들을 도출
- 2017년 4월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 실무회의 의제가 채택되면서 장애인 자립지원 T/F 회의가 두 차례 진행되었고, 총 4회에 걸친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자립생활 중장기계획(안) 마련

○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5개년(2018~2022년)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매년 계획내용을 예산상황 및 제반여건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설계됨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추진방향은 지역사회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마련, 지역사회 자립생활 거주공간 확충,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 증대 세 가지로 설정됨
-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지역사회정착을 지원할 기구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 체험홈 확대운영, 운영비 확대지원, 자립생활주택 확충과 함께 자립지원 서비스로 자립생활정착금 지원확대,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IL)지원 확대, 응급안전모니터링 운영, 자립통장 지원 등 양질의 서비스 확충방안을 제시함

○ 이후 경기도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욕구에 적극 대처하도록 법적 근거조항을 더욱 강화

-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기 조례 제정
- 하지만 현행법과 조례에는 장애인이 시설 등에서 폭행, 학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장애인 발생 시 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
- 이에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자립생활 지원 대상을 종전 시설퇴소자에서 학대피해장애인까지 확대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들의 초기 지역사회 정착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201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은 자립생활 전환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시군과의 매칭사업 및 경기도 시범사업 등을 수행

- 2020년 자립전환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자립전환지원사업(19,000천원), 자립생활 체험홈(28,000천원),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104,600천원), 찾아가는 자립전환교육(13,400천원)에 도비가 투입되어 운영 중임
- 현재 자립전환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임시조직인 누림센터의 자립전환 T/F팀을 구성하여 시범운영 중으로 향후 공식조직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음

○ 이처럼 경기도 자립생활지원 중장기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사회적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진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2020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진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는 자립생활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의 토대가 됨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본 조례의 목적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음
-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자립생활 지원 유형은 크게 활동보조서비스, 주거서비스,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역량강화교육서비스,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지원서비스, 재활보조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그 밖에 자립생활보장에 필요한 서비스로 총 9가지로 구성됨

- 특히 제6조는 경기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2018~2022)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
- 또한 경기도는 지역사회 내 중증장애인 자립정착 지원서비스를 총괄·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을 설치하여 정기적인 탈시설 욕구조사를 비롯하여 거주시설 이용자 대상 정기적인 전환서비스 상담, 자립지원교육 및 지역사회 자립정보제공, 체험홈·자립생활주택·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및 주거공간 연계 운영, 장애유형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 강화 등의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기능을 운영하도록 규정함
-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매년 계획내용을 예산상황 및 제반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함으로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추진계획(2018~2022)」을 토대로 지역사회 자립생활 거주공간 확보 및 자립지원 서비스 추진

○ 경기도는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추진방향 및 전략을 구축

- 중증장애인의 자립정착을 위한 추진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지역사회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 마련, 지역사회 자립생활 거주공간 확충,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 증대로 설정
- 첫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과제는 조례에 법적 설치 근거가 마련된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단의 설치·운영
- 둘째,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거주공간 확충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총 3가지로 중증장애인 체험홈 확대운영, 중증장애인 체험홈 운영비 확대지원, 자립생활주택 확충
- 셋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 증대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총 7가지로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확대,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IL) 지원 확대, 응급안전모니터링 운영, 자립통장 지원,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저상버스 도입지원을 연차별로 추진전략을 수립

〈그림 1〉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추진방향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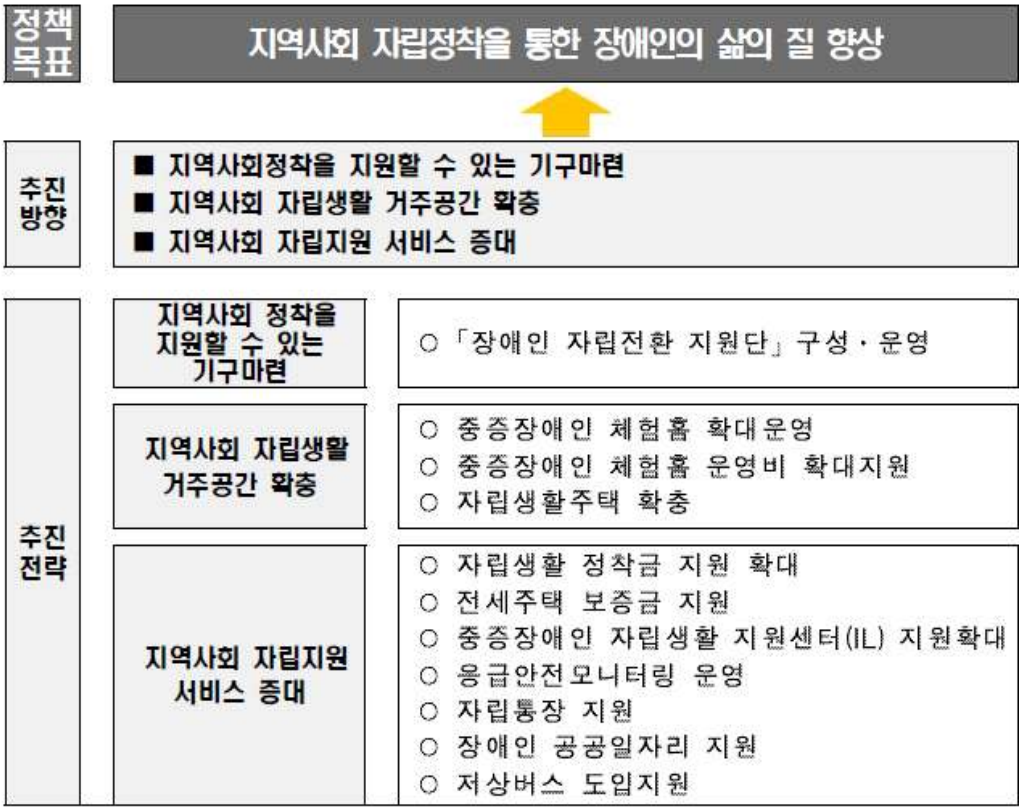

자료: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2018~2022)

○ 현재 경기도는 자립욕구를 지닌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자립지원서비스를 추진

- 우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비지원센터는 6곳, 도비지원센터는 46곳에 개소 당 대략 155,489천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 중이며, 주요사업에는 장애인권익옹호, 개인별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동료상담, 이동서비스 등 제공하고 있음

-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은 중증장애인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프로그램 훈련으로 자립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주거 서비스로 19개 시군에 2020년 총 50채가 운영 중이며 설치비는 채당 1억원, 운영비는 채당 4천만 원 정도 지원됨

- 경기도 누림하우스는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주택 확보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20년 기준 116,000천원을 투입, 현재 안산과 양주에 총 2채(5명 입주)를 운영 중임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은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기준 총 170,000천원의 사업비를 14개 시군의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체험홈 수료자 17명에게 자립초기 필요경비로 지원
- 자립전환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누림센터 내 자립전환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자립전환지원사업(19,000천원), 자립생활 체험홈 활성화 지원(28,000천원), 자립생활주택 누림하우스 시범사업 운영(104,600천원), 찾아가는 자립전환교육(13,400천원)을 시범운영 중이며 향후 자립전환지원단 또는 탈시설지원센터로 확대할 계획임

〈표 1〉 연도별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추진계획	추진현황	추진계획	추진현황	추진계획	추진현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44개소	44개소	49개소	46개소	54개소	52개소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	30채	30채	36채	34채	42채	50채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17명	17명	20명	25명	20명	32명(17명)*
자립생활주택(누림하우스)확충	-	-	3개소	2개소	6개소	2개소
장애인자립전환지원단 운영 (누림센터 내)	3명	3명	4명	4명	4명	4명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20년 장애인자립지원과 업무편람」
* ( )안은 2020년 본예산 편성안 / 2020년 정착금 집행상황을 토대로 추경예산 편성

■ 경기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자립희망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전환지원체계 구축 노력에도 구조적 여건 및 제약으로 사업추진의 한계 노출

○ 경기도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을 매년 예산 상황 및 제반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계획 중이지만 여전히 추진속도는 매우 느린 편

- 사업별 추진계획과 현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자립생활주택인 '누림하우스'는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개소만 유지 운영되고 있음
- 또한「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2018~2022)」의 추진과제 중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과 '자립통장 지원'은 예산부족으로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자립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이 원활히 조성되지 못하는 실정임

- 경기도가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사업 전반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현재 자립지원체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취약한 상황임

■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서비스는 타 시도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경기도 장애인구 대비 부족한 상황

○ 2020년 기준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559,878명으로 17개 시·도 중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중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 정착금의 지원은 서울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경기도 장애인구가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상황에서는 예산 지원이 많다고 보기 어려움

- 2019년 기준 국비·시·도비 지원 받는 경기도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총 46개소로 도비지원액에 비해 시군구비 지원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는 총 49개소로 서울시 지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서울시의 시·도비 센터 1개소당 지원액은 214,000천원으로 경기도(155,489천원)보다 많은 상황
- 2020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도 서울시(14,833,890천원)와 경기도(8,085,428천원) 예산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남

〈표 2〉 2019년 시·도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소, 천원, %)

구분 (시·도별)	등록장애인수*	운영 센터	국비 센터	시 ·도비 센터	시·도비 센터 1개소당 지원액	분담비율 (광역:기초)
경 기	559,878	57	6	40	155,489	30:70
서 울	394,843	68	8	41	214,000	100:0
부 산	175,378	17	7	9	134,276	100:0
대 구	125,485	7	5	2	110,000 ~ 160,000	100:0
인 천	144,574	10	5	5	155,489	50:50
광 주	70,177	9	4	5	109,098	차등보조
대 전	73,222	7	3	4	97,839	100:0
울 산	51,014	4	2	2	127,744	-

구분 (시·도별)	등록장애인수*	운영 센터	국비 센터	시 ·도비 센터	시·도비 센터 1개소당 지원액	분담비율 (광역:기초)
세 종	12,046	1	1	-	-	-
강 원	101,484	5	4	-	-	-
충 북	97,688	9	4	5	129,106	40:60
충 남	133,724	7	5	2	190,000	100:0
전 북	132,364	5	3	2	386,604	-
전 남	141,888	5	5	-	-	-
경 북	180,898	5	2	1	70,000	20:80
경 남	187,968	20	5	10	186,492	40:60
제 주	36,287	2	2	-	-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20년 장애인자립지원과 업무편람」
*통계청(2019),「장애인 현황」

- 자립생활 체험홈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체험홈에 거주하며 기초적인 사회활동에 필요한 생활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
- 경기도의 자립생활 체험홈은 총 34채로 서울시(72채)의 절반 수준이며, 6천명이 넘는 경기도 거주시설 장애인들을 수용하기에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채 당 연간 운영비 지원은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40,000천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으로 보이지만, 총 사업비에서는 2020년 기준 경기도가 3,600백만원으로 서울시 4,587백만원에 비해 적은 상황

〈표 3〉 2019년 시·도별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현황

(단위: 개소, 천원, %)

	체험홈	채 당 연간 운영비 지원	분담비율 (광역:기초)		체험홈	채 당 연간 운영비 지원	분담비율 (광역:기초)
경 기	34채	40,000	30:70	강 원	5채	25,000	50:50
서 울	72채	12,000	100:0	충 북	13채	40,000	100:0
부 산	7채	18,000	100:0	충 남	3개소	6,000	차등보조 30:70 45:55
대 구	15채	44,000	100:0	전 북	2개소	-	-
인 천	7채	40,000	50:50	전 남	7채	51,000	20:80
광 주	9채	40,000	-	경 북	1개소	35,000	30:70
대 전	3채	32,000	100:0	경 남	22개소	미지원	-
울 산	5채	미지원	-	제 주	2채	31,000	100:0
세 종	-	-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20년 장애인자립지원과 업무편람」

- 자립생활 정착금은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주거마련과 생활용품 구매 등 지역사회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
-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인원은 서울시가 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18명, 경기 16명, 대구 13명 등 순으로 나타남
- 또한, 1인당 지급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12,000천원)이며, 경기도, 대구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7개 지역에서는 1인당 10,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음
- 지자체별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시설을 퇴소한 전체장애인('19년 기준 2,697명) 중 정착금을 지원받는 인원(146명)이 5.4%에 불과한 것이 더 큰 문제로 파악됨(연합뉴스, 2020.09.23. 기사)

〈표 4〉 2019년 시·도별 자립생활 정착금 현황

(단위: 명, 천원)

	지원인원*	2019 예산총액	1인당 지급액		지원인원*	2019 예산총액	1인당 지급액
경 기	16	250,000	10,000	강 원	7	19,500	6,500
서 울	56	180,000	12,000	충 북	5	115,000	5,000
부 산	18	140,000	7,000	충 남	0	-	-
대 구	13	300,000	10,000	전 북	7	50,000	10,000
인 천	4	80,000	8,000	전 남	3	100,000	10,000
광 주	3	280,000	8,000	경 북	5	100,000	10,000
대 전	2	16,000	8,000	경 남	5	70,000	10,000
울 산	0	-	-	제 주	2	100,000	10,000
세 종	0	-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20년 장애인자립지원과 업무편람」
* 지원인원은 에이블뉴스 기사(2020.09.23.) 김성주 의원실 자료에서 반영

○ 경기도 자립생활지원사업 중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서비스는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인 '누림하우스' 두 가지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주택모델을 지닌 서울시에 비해 단조로운 편

- 경기도는 자립희망 장애인의 주거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편인데,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도내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는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인 '누림하우스'가 거의 유일한 형태임.

- 그에 비해 서울시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른 세분화된 주택모델을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과 함께 '22년까지 800명의 장애인을 '탈시설'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 이처럼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는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른 주택모델이 다양하지 않고,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도 설정되지 않아 당국의 정책적 의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5〉 경기도 및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주거 지원 서비스

구분		대상	지원내용	전담인력	이용기간
경기도 자립생활 체험홈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재가 장애인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프로그램 훈련 (대중교통 이용하기, 은행이용, 시장보기, 금전관리, 이웃사귀기 등)	1인	2년 (최대 4년)
경기도 누림하우스		자립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체험홈, 거주시설 퇴소 예정자 우선지원)	- 입주자 개별 ILP(자립생활프로그램)수립 및 자립생활컨설팅 등	활동지원사 1명	-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가형	기본적인 자기 관리 가능한 장애인	- 건강, 금전,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리 - 동료 상담, 대중교통 익히기, 지역사회 기관 이용,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 지역사회 관계 - 직업 훈련 연계 등 직업 탐색	코디네이터 1인	기본 2년 (최대 4년)
	다형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건강, 금전,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리 - 동료 상담, 대중교통 익히기, 지역사회 기관 이용,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 지역사회 관계 - 직업 훈련 연계 등 직업 탐색	코디네이터 1인, 보조인력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우선지원)	- 입주자의 입주 지원 및 상담, 주택 시설 관리 지원 - 공과금 및 임차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 의료 및 건강 관리 지원, 취업 상담 및 자립 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 서비스	주거 코디네이터 (입주자와 1:6이하)	최장 20년
서울시 체험형 자립생활 주택		체험홈 미운영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 당사자 욕구 및 특성에 맞춘 자립 체험 프로그램 - 유형별 자립생활주택 지원 내용과 동일	-	1개월 (최장 3개월)

자료 : 오욱찬 외(2019),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에 관한 연구」 재구성

■ 경기도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 증대함에도 구체적인 자립지원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

○ 경기도 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313개, 입소자 6,111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입소인원을 보유함에도 자립생활지원사업은 다소 미진한 편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탈시설 정책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에 관련 계획을 포함시켜왔으며 본격적으로 2017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서 '탈시설 및 주거 지원 강화'라는 중점과제와 세부 계획까지 제시
- 앞서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탈시설화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하였으며, 2014년 「제1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3~2017)'에 이어 2017년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8~2022)」을 수립, 단계별로 사업을 실행해나가고 있음
- 그러나 경기도는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사회서비스 중 주거보장에 대한 욕구가 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이병화 외, 2015), 구체적인 탈시설 자립지원정책을 포함한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임

〈표 6〉 2018년 시·도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시설수	입소인원		시설수	입소인원
경 기	**313**	**6,111**	강 원	68	1,543
서 울	276	3,738	충 북	87	1,926
부 산	75	1,402	충 남	60	1,788
대 구	51	1,503	전 북	71	1,716
인 천	71	1,062	전 남	58	1,303
광 주	80	991	경 북	88	2,548
대 전	74	1,209	경 남	94	1,920
울 산	25	650	제 주	32	584
세 종	4	158			

자료 :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성심재활원, 평강타운 장애인 인권 침해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립희망 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되었음에도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 역시 미흡한 수준

- 최근 평택시 평강타운(미신고시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에 의한 장애인 폭행 사망 사건과 오산시 성심재활원 재활교사에 의한 장애인 간 폭행사건이 발생함
- 정부는 2011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을 30명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성심재활원은 예외시설로 구분되어 발달장애인 81명이 거주하는 거대 시설을 유지하고 있었음
- 정부의 시설 소규모화 정책으로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이 미신고시설로 유입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장애계에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인 거주시설 폐쇄를 요구하고 있음
- 이에 경기도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침해사건 이후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추진, 성심재활원 거주 장애인 대상 자립욕구 실태조사를 하여 자립희망 장애인 42명 중 즉시 자립을 희망하는 14명에 대한 자립지원 대책을 시·군과 협의 진행
- 문제는 일부 거주시설의 피해자 자립지원 대책을 넘어서 경기도 전체 자립희망 중증장애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자립지원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경제활동 촉진을 목표로 한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발굴 및 지원도 미흡**

- 장애인 자립에 있어서 경제적 기반이 필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산성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임
- 실제로 2018년 기준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가 77.9%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일할 의사에 대한 응답으로는 '없다'가 88.5%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를 개인에게서 찾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음
- 이에 2020년 서울시는 전액 시비로 약 12억 원을 투입하여, 최중증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을 선도적으로 시도하였으며, 맞춤형 공공일자리 260개를 만들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함(서울시 보도자료, 2020)
- 반면, 경기도의 장애인일자리 관련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장애인 자립의 핵심기반이 되는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공공형 일자리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교육 훈련영역의 투자는 여전히 미약한 실정임

〈그림 2〉 중증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구성 (15세 이상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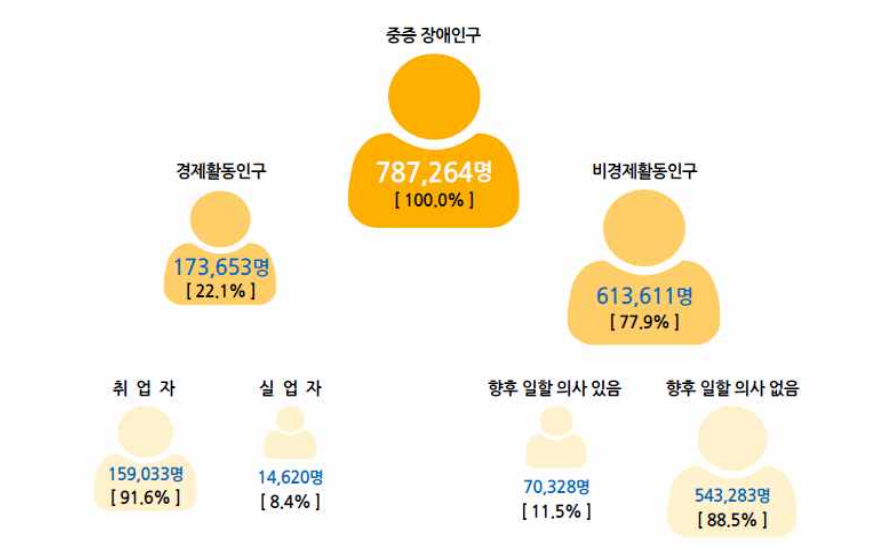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한눈에 보는 2019 장애인 통계」

Ⅲ 향후 개선과제

■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예산 확대 및 정책 효과성 검토 필요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2021년 예산안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2.72%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장애인자립지원과 예산은 0.29%에 그침(경기도 예산안, 2020)

-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장애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앞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 당 담당해야 하는 장애인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과 이에 대한 예산 확대가 불가피함
- 또한 경기도는 장애인구 뿐만 아니라, 거주시설도 가장 많은 곳으로서 장애인의 탈시설로 인한 체험홈, 누림하우스 등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공급량 확대와 지역사회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한 '경기도형 자립생활 주택모델' 개발과 함께 정착지원금 인원 확대가 필요함

○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책효과성 분석을 통한 점검 필요

- 그동안 경기도는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자립지원 사업들을 추진해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와 장애인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연구가 없는 상황임
- 자립지원사업의 정책 효과성 분석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채 경기도형 자립생활주택모델 개발과 정착지원금 확대 등 자립지원사업의 실질적 수요에 맞춘 예산 확충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
- 또한 장애인 자립지원과의 신설 이후 이렇다 할 만 한 자립지원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고려한 자립지원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과 세부 과제를 수립해야 할 시점임

■ 실효성 있는 경기도 중증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정책 수립 요구

○ 현 정부는 국정과제 중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탈시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을 추진 중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장애인 탈시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경기도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18~'22)」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지원사업 중 '자립생활 체험홈'을 매년 6개씩 늘린다는 계획은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 제기
- 이에 경기도는 중증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자립전환지원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주요기능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립전환지원단을 조속히 설치할 필요

-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따르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자립전환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민간위탁도 가능함
- 장애인 전환지원단은 정기적인 탈시설 욕구조사부터 거주시설 이용자 대상 정기적인 전환서비스 상담, 자립지원 교육, 자립계획수립 및 지역사회 자립정보 제공,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전세주

택 입주자 선정 및 주거공간 연계운영, 장애유형에 따른 자립지원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자립지원서비스를 일련의 체계적인 흐름과 과정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담당

- 하지만 현재 경기도 자립전환지원단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자립전환지원 TF팀만 구성, 운영되고 있어 조례에 제시된 자립지원서비스들을 원활하고 유기적으로 제공하는데 한계를 지님
- 따라서 경기도 거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립전환지원단을 설치하여 자립생활지원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

■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 필요

○ 특히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최근 만들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보 필요

- 2018년 기준 경기도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 장애인이 42.4%로 앞으로 고령장애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경기도는 고령장애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활동지원서비스에 소요되는 추가예산을 추계하여 확보할 필요

○ 당사자 중심의 실질적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자립환경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환경구축방안 모색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살아갈 지역사회의 자립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민관 가용자원들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자립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지금까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초로 자립생활지원사업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도출했는지 평가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보완, 개선해야 할 추진과제들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현장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만들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경기도(2017).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2018~2022),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도(2020). 2020년 장애인자립지원과 업무편람,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도(2020). 2021년 경기도 예산안.

보건복지부(2019).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특별시(2020).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전액 시비 투입해 노동권 실현' 보도자료

서울특별시(2020).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예산.

서울특별시(2020).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

오욱찬, 김성희, 박광옥, 오다은(2019).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한눈에 보는 2019 장애인 통계.

"거주시설 퇴소한 장애인 100명 중 4명만 자립지원금 받아", 연합뉴스(2020.09.23.).

"탈시설 장애인 4.1%만 자립정착금 지원", 에이블뉴스(2020.09.23.).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FOCUS 2020-12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진석범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현장공감 복지재단

12
9 772713 985004
ISSN 2713-9859